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3215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32156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683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2. 11. 9.

판결 선고 2023. 1. 1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683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7. 7. 접수 제1514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21. 6. 1.경 건축용 철재를 판매하는 피고로부터 20,410,940원 상당의 철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7. 7.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는 D이 위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와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 피고의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 시킬지라도 D과 원고는 이의하지 아니한다.

다. D은 위 계약체결 이후로도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20,410,94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도 D에게 철재를 추가로 공급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D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철재를 공급해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D의 기존채무 및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등기를 마친 후부터 기존채무의 선이행을 요구하며 D에게 철재를 공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로서는 기존채무의 변제가 우선되어야 철재공급이 될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이를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터잡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피담보채무에는 D이 피고로부터 장래 물품을 공급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뿐만 아니라 2021. 6. 1.경 공급받은 20,410,940원의 물품대금 채무도 포함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D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철재를 공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장래 거래함에 있어 피고의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 시킬지라도 D과 원고는 이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장래에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도 D에게 미수금채무가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추가로 물품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D의 피고에 대한 위 20,410,94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김지영

판사윤남현

별지